

광주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2나200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2나2009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가합5279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현길환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5. 19.

판결선고 2022. 6. 23.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가합5279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M씨 N의 14대손인 O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H,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제1심 공동피고였던 C, D의 소송상 지위를 생략하고 이름으로만 표시한다)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1975. 10.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5.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H, C,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H 명의 지분은 강제경매절차에서 2005. 4. 19. D에게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2021. 2. 5. 종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종중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종중원들인 H, 피고,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의 조부인 P가 H, 피고, C, D에게 증여해 준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486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원고가 종중으로 존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종중원인 H, 피고, C, D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의 등기명의자인 H(19대손), 피고(20대손), C(20대손), D(20대손)은 원고 종중원들의 공동선조인 O(14대손)의 자식들인 15대손 Q, R, S, T의 각 후손들로서 각각 다른 집안에 속한다.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조부 P 소유의 재산이었다면 P가 자신의 집안이 아닌 H,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씩을 증여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P 소유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중 1인인 D은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로서 자신과 피고 등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D 및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그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D, C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8. 채권자 원고, 피보전권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광주지방법원 2005카단7817호)가 마쳐졌는데,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장기간 가처분이의나 취소 신청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인 2021. 4. 30. 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훈, 판사 성충용, 판사 이수영

별지

부동산 목록

광주 남구 E 답 1276㎡

